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법령해석 사례

- 자동차리스 고객에게 만기시점의 처리방법(반납, 인수, 재금융) 안내 및 재금융 절차 안내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'전화권유판매'에 해당하는지 여부 (230327)-

▪ 요청대상 행위

자동차리스 계약 고객에게 만기 전에 최초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시점의 처리방법(반납, 인수, 재금융)을 안내하는 행위 및 고객이 재금융을 원하는 경우 재금융 절차를 안내하는 행위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금소법")」 상 '전화권유판매'에 해당하는지 여부

▪ 관련 법령 요지

금융소비자보호법상 '전화권유판매'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의미하며, 방문판매법 제2조제3호에서는 '전화권유판매'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함

▪ 회신 요지

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만기시점에 최초 리스계약조건에 따른 만기 시 처리방법(반납, 인수, 재금융)을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 다만 최초 안내 및 이어지는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음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Contacts

한창훈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182 8102
E. chhan@yoonyang.com

장황림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003 7594
E. hljang@yoonyang.com

정현석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003 7047
E. hsjung@yoonyang.com

서종수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003 7561
E. csseo@yoonyang.com

연승재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182 8385
E. sjyeon@yoonyang.com

이유진
파트너변호사
T. (+82) 2 6182 8111
E. yjl@yoonyang.com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